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신축을 위해 구평동 34-2번지의 토지 및 신축건물을 구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함

(단위:m², 천원)

사업명	구분	소재지	면적	지목(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계						282,107
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건립	토지	34-2	346 (104평)	전		139,092
	신축 건물	34-2	100 (30평)	철근콘크리트 스ラ브	지상2층 (각층 15평)	143,015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
-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4.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으로 주민복지회관, 한센양로원 부지매입비와 토목공사비등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구평동 4통지역 경로당 신축을 하려는 것으로 2003년 하반기(12월중)에 토지를 매입(139백)하고 2004. 상반기중 건축(143백)을 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평동지역발전협의회(회장 박준영)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을 뿐아니라, 주민상호간에 마찰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됨.
- 다만, 2003. 11. 25일 제115회 2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긴급승인해준 구평동 한센양로원 부지매입에 대한 취득승인이 있은지 불과 1개월 사이에 또다른 취득승인을 상정 하는 것은 계획성없는 행정의 단적인 예라 생각되며, 차후에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야 할것임.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8조(심의) 생략	제8조(심의) ①구청장은 제7조2항의 ----- -----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단체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②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의 한 구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중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은 본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구성) <u>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하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u> 에서 심의할 사항은 사하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 10조(위원회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장은 부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기 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당연직위원:총무과장, 재무과장, <u>사회과장</u> 2. 위촉직위원:사하구의원2명, 민간 전문가, 사회단체에 대한 의견과 덕망이 있는자등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 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 장이 임명하며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제15조(회의록)생략	제15조(회의록) 삭제